### 보수규정

개정 2013. 2.22 시행 2013. 2.22 개정 2013. 3.22 시행 2013. 3.22 개정 2013.12.26 시행 2014. 1. 1 개정 2014. 2.20 시행 2014. 2.20 개정 2014. 4.16 시행 2014. 4.16 개정 2014. 7.29 시행 2014. 7.29 개정 2015. 2.23 시행 2015. 3. 1 개정 2015.12.29 시행 2016. 1. 1 개정 2016. 3.24 시행 2016. 3.26 개정 2016. 4.26 시행 2017. 1. 1 개정 2016. 6.30 시행 2016. 6.30 개정 2016.11.23 시행 2017. 1. 1 개정 2017. 3.22 시행 2017. 3.27 개정 2017.10.25 시행 2017.10.26 개정 2017.11.22 시행 2018. 1. 1 개정 2018. 3.28 시행 2018. 1. 1 개정 2018.12.26 시행 2019. 1. 1 개정 2019. 3.27 시행 2019. 3.28 개정 2020. 3.25 시행 2020. 3.26

개정 2020. 5.27 시행 2020. 6. 1 개정 2020. 7.22 시행 2020. 7.23 개정 2020.12.23 시행 2020.12.31 개정 2021. 2.24 시행 2021. 2.25 개정 2021. 3.24 시행 2021. 3.25 개정 2021. 6.23 시행 2021. 7. 1 개정 2021.12.22 시행 2021.12.23 개정 2022. 3.23 시행 2022. 3.24 개정 2022. 6.22 시행 2022. 6.30 개정 2022.10.26 시행 2022.11. 1 개정 2022.12.28 시행 2022.12.29 개정 2023. 1.25 시행 2023. 1.26 개정 2023, 3.29 시행 2023, 3.30 개정 2023.11.22 시행 2024. 1. 1 개정 2023.11.29 시행 2023.11.30 개정 2023.12.27 시행 2023.12.28 개정 2024. 3.27 시행 2024. 4. 1. 개정 2024.12.26 시행 2024.12.26 개정 2025. 3.26 시행 2025. 4. 1

제정 2012. 5.23 개정 2012.12.26 시행 2013. 1. 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임원이라 함은 사장, 감사, 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6> <개정 2014.7.29> <개정 2015.12.29.><개정 201 6.4.26.> <개정 2017.11.22.> <개정 2020.5.27.><개정 2021.2.24.><개

- 정 2022.10.26.><개정 2023.11.22.><개정 2025.3.26.>
  - 1.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한 기준급과 직무의 난이도, 책임의 정도 등을 반영한 직무급과 직무실적평가급으로 구성한다.
  - 나. 성과연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 급과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내부평가급으로 구성한다.
  - 2. "연봉월액"이라 함은 기준급과 직무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3. "연봉외 급여"라 함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수당 및 법정수당을 말한다.
- 4. "보수"라 함은 연봉월액과 연봉외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5.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공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의 1개월분 및 직무실적평가급 최소지급분의 1개월분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6.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직전 지급된 성과연봉과 직무실적평가급 각 항목을 12등분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수지급기일)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장은 전부 또는 일부 직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정할 수 있다.

제5조(보수의 선급) 다음 각호의 경우 이미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이를 선급한다.

-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본조개정 2021.2.24.]

제6조(보수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월로 한다.

제7조(보수 계산) 보수는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1.23.>

## [제목개정 2016.11.23.]

제8조(보수의 일할 계산기준) 보수의 월액을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보수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단수처리) 연봉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삭한다.

<개정 2023.12.27.>

- 제10조(전근시의 보수) 직원이 전근하는 때에는 신임지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 이후 발령된 경우와 사무인계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일까지 전임지에서 출발하지 못한 때에는 전임지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면직 등의 경우 보수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3.>
  -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 3. 직원이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중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가 감액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보수를 계산하여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6.11.23.>

[제목개정 2016.11.23.]

- 제12조(휴가기간중의 보수)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 중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2 9.><개정 2021.2.24.>
- 제13조(휴직기간의 보수) ①인사규정 제31조 휴직사유에 따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휴직에 대해서는 무급을 원 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개정 2014.4.16><개정 2021.2.24.>
  - ②<삭제 2021.2.24.>
  - ③<삭제 2021.2.24.>
  - ④<삭제 2021.2.24.>
  - ⑤<삭제 2021.2.24.>
  - ⑥<삭제 2021.2.24.>
- 제14조(대기발령 기간중의 보수) 대기발령을 받은 자의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4.>
- 제15조(결근기간 중의 보수) 결근에 대한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26.> <개정 2021.2.24.>
- 제16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퇴직자의 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4.>
- 제17조(겸직자 보수) 본직 이외의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의2(임금피크 대상자의 연봉)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연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6.11.23.]

제18조(수습기간의 보수) 수습 직원에 대한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4.>

제19조(계약직의 보수) 계약직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장 연봉제

제20조(연봉의 구성)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한다.

제21조(연봉의 지급) 직무실적평가급을 제외한 기본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제27조, 제27조의3에 따라 지급하며 직무실적평가급은 제27조의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1.22.>

제22조(기본연봉 및 기본연봉 한계액) ①임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2.22> <개정 2013.12.26> <개정 2014.2.20.> <개정 2 015.2.23.> <개정 2016.3.24.> <개정 2017.3.22.> <개정 2018.3.27.> <개정 2019.3.27.> <개정 2020.3.25.> <개정 2021.3.24.> <개정 202 2.3.23.><개정 2023.3.29.><개정 2024.3.27.><개정 2025.3.26.>

②직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26.> <개정 2013.3.22.><개정 2016.4.26.><개정 2020.3.25.><개정 2020. 5.27.><개정 2021.3.24.><개정 2022.3.23.><개정 2023.11.29.> <개정 2024.3.27.>

- ③직원의 직무급은 별표 2-1과 같다. 단, 직무급 지급을 위한 직무의 등급 결정,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26.> <개정 2016.4.26.> <개정 2016.11.23.> <개정 2017.11.2 2.> <개정 2018.12.26.> <개정 2020.5.27.> <개정 2020.12.23.> <개정 2021.6.23.> <개정 2021.12.22.> <개정 2022.12.28.> <개정 2023.12.27.> <개정 2024.12.26.>
- ④ <삭제 2016.4.26.>
- ⑤ 직원의 직무실적평가급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 1.22.>
- 제23조(신규채용시 연봉) ①신규 채용된자의 기준급은 별표 2의 직급별·직책별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우수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급 한계액의 130%이내에서 특별인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개정 2016.4.26.>
  - ②공개경쟁채용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군 경력자는 개인별 기준급에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6.4.26.><개정 2021.2.24.>
- 제24조(승진시 연봉) ①직원이 승진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승진가급을 승진 전 기준급에 합산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12.12.2 6.> <개정 2016.4.26.><개정 2020.5.27.><개정 2022.3.23.>
  - ②2단계 이상 승진자의 경우 각 단계별 승진가급을 합산하여 책정

- 한다. <개정 2020.5.27.>
-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준급이 당해 직급 및 직책의 기준급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급 하한액으로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16.4.26.><개정 2020.5.27.>
- ④직무급, 직무실적평가급 재원 전환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사장이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26.> <개정 2016.4.26.> <개정 2021.2.2 4.><개정 2022.10.26.>
- ⑤ <삭제 2016.4.26>
- 제25조(강임시의 연봉)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는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 및 기준급 한계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6.4.26.>
-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①강등처분을 받은 자는 3개월 동안 연봉월액(강등 전 승진 가산급을 감액한 금액)의 30%를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2.24.>
  - ②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 동안 연봉월액의 30%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0.25.>
  - ③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1회에 연봉월액 1일분 2분의 1을 감하여지급한다. 단 처분기간 동안 감액총액이 연봉월액의 10%를 초과할수 없다. <신설 2017.10.25.>
  - ④제3항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감액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액 지급한다. <신설 2017.10.25.>
  - ⑤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3.29.>

[본조개정 2021.2.24.]

- 제26조의2(강등시의 연봉 책정) ①강등처분을 받은 자의 연봉은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 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처분을 받은 자의 연봉은 강등된 직급에 서의 연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2.24.]

- 제27조(성과연봉중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 ①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로산정된 기관지급률에 내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6.4.26.> <개정 2017.10.25.><개정 2021.2.24.>
  - ②<삭제 2021.2.24.>
  - ③<삭제 2021.2.24.>
  - ④<삭제 2021.2.24.>
- 제27조의2(직무실적평가급의 지급) ① 직무실적평가급은 매년 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6.4.26.> <개정 2016.11.23.> <개정 2017.10.25.><개정 2021.2.24.><개정 2022.10.26.>

#### ②<삭제 2021.2.24.>

[본조 제목개정 2022.10.26.][본조 제목개정 2023.11.22.]

제27조의3(성과연봉중 내부평가급의 지급) ①내부평가급은 매년 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2.12.26.> <개정 2016.4.26.> <개정 2017.10.25.><개정 202 1.2.24.>

#### ②<삭제 2021.2.24.>

- 제27조의4(성과연봉 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해당연 도의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기타 이에 준하는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3.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기타 이에 준하는 징계사유로 징계처분 을 받은 자
  - 4. 음주운전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21.2.24.]

제27조의5(성과연봉 부정지급 금지) 소속 임·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연 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1년간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본조신설 2021.2.24.]

- 제28조(연봉의 조정 및 이의신청) ①1급 이하 3급갑 팀장 이상 직원의 기준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조정하되, 평가 및 연봉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26.> <개정 2017.10.25.><개정 2021.2.24.>
  - ②3급갑 이하 직원(전문직 포함)의 기준급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26.> <개정 2017.10.25.>
  - ③연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수담당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6>
  - ④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사장은 따로 연봉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26>
  - ⑤연봉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2012.12.26.>
  -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등 조정 인상액은 기준급에 누적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6.11.23.>
- 제29조(연봉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봉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 제3장 연봉외 급여

제30조(가족수당) ①공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7.2

- 9.> <개정 2017.11.22.><개정 2021.2.24.>
- ②<삭제 2021.2.24.>
- ③<삭제 2021.2.24.>
- ④<삭제 2021.2.24.>
- ⑤지급 기준 등 가족수당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2.24.>
- 제31조(시간외 근무 등의 수당산정) ①복무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 등을 한 경우 수당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 4.>
  - ②<삭제 2021.2.24.>

[본조제목개정 2021.2.24.]

제31조의2 <삭제 2021.2.24.>

- 제32조(연차휴가수당) ①공사는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 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그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 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2.24.>
  - ②제1항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 산정기준 등은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4.>
  - ③<삭제 2021.2.24.>

[본조신설, 종전 제32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2016.4.26.>] 제33조(특수직수당) <삭제 2017.11.22.>

#### 제4장 퇴직금

- 제34조(퇴직급여) ①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퇴직연금규약을 따른다.
  - 1.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
  - 2.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제도
  - ②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은 자신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가능하며, 퇴직급여제도의 세부 운용방안은 퇴직연금규약 범위 내에서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임원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 6>
  - 1.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한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기준 급여 1월분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기준 급여는 퇴직시점의 연봉월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 지급기준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퇴직급여=퇴직급여 지급기준 급여×(총 근무연수+잔여근무월수/12)

2.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한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매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기준 급여 1월분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기준 급여는 산정기간 중 연봉월액의 평균금 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 지급기준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 다.

퇴직급여=퇴직급여 지급기준 급여×(총 근무연수+잔여근무월수/12)

- ④<삭제 2021.2.24.>
- ⑤<삭제 2021.2.24.>
- ⑥<삭제 2021.2.24.>
- ⑦<삭제 2021.2.24.>
- ⑧산정기준, 방식 등 퇴직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2.24.>
- ⑨직원이 인사규정 제39조에 의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2.3.23.>
- ⑩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퇴직급여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두며,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적립금 운용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2.6.22.>
- 제34조의2(임원의 퇴직급여 지급 제한)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 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 후 그 사유가소멸되었을 때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류일 때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3.3.29.]

제35조<삭제 2021.2.24.>

제35조의 2<삭제 2021.2.24.>

## 제5장 보칙

제36조<삭제 2021.2.24.>

제37조(내부평가급 재원의 조성 및 관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내부평가급은 2008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원의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되어 최초 조성된 금액으로, 내부평가급의 재원 조성시 기준 재원으로 삼는다. <개정 2016.4.26.>

제38조(급식비 운영) ①직원의 기본연봉은 급식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

- 으로 본다. <개정 2021.2.24.>
- ②급식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2.24.> 제39조(보육수당 운영) ①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기본연봉은 보육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 ②보육수당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2.24.]

제40조(세부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2.24.]

##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 2012.12.26.>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4조 제4항 및 제5항 시행전 미조정자는 이 규정 시행에 따라 기본연봉을 조정한다.

### 부 칙<2013.2.22.>

이 규정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3.3.22.>

이 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3.12.26.>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2.20.>

이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4.16.>

이 규정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7.29.>

이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2.23.>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3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5.12.29.>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3.24.>

이 규정은 201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 2016.4.26.>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6.6.30.>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11.23.>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제2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7.3.22.>

이 규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 부 칙<2017.10.25.>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7.11.22.>

-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2조 제3항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 중 직무급 관련 부분(직 무급 가산액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 2. 제34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

## 부 칙<2018.3.28.>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 인상된 기본연봉을 적용한다.

## 부 칙<2018.12.26.>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9.3.27.>

- ①(시행일 및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②(임원 기본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 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 부 칙<2020.3.25.>

- ①(시행일 및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②(임원 기본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 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 부 **칙<2020.5.27.>**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2>** 이 규정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12.23.>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1.2.24.>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9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1.3.24.>

①(시행일 및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②(임원 기본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 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 부 칙<2021.6.23.>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12.22.>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2.3.23.>

①(시행일 및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②(임원 기본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 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 부 칙<2022.6.22.>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10.26.>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12.28.>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3.1.25.>

이 규정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3.3.29.>

- ①(시행일 및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 기본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 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 부 칙<2023.11.22.>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24년도에 지급하는 직무실적평가급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3.11.29.>

이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2023.12.27.>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2024.3.27.>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2024.12.26.>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2025.3.26>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개정 2013.2.22> <개정 2013.12.26> <개정 2014.2.20> <개정 2015.2.23.> <개정 2016.3.24.> <개정 2017.3.22.> <개정 2018.3.28.> <개정 2019.3.27.> <개정 2020.3.25.> <개정 2021.3.24.> <개정 2022.3.23.><개정 2023.3.29.><개정 2024.3.27.><개정 2025.3.26.>

# 임원의 연봉표

(단위 : 원)

구분	금액
사장	146,668,000
감사	117,334,000
전무이사	117,334,000
상임이사	117,334,000

(별표2) <개정 2012.12.26.> <개정 2016.4.26.><개정 2020.3.25.><개정 2020.5.27.><개정 2021.3.24.> <개정 2022.3.23.><개정 2023.11.29.><개정 2024.3.27.>

## 직원의 기준급 한계액표

(단위 : 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	92,069,000	85,000,000
2급/3급갑팀장	86,405,000	75,000,000
3급갑	82,620,000	62,000,000
3급을	77,369,000	52,000,000
4급	70,949,000	42,000,000
5급	62,143,000	32,000,000
전문직	86,405,000	41,000,000

※ 단, 3급갑팀장이 파트장으로 임용될 경우 혹은 무보직시, 2급/3급갑팀장의 기준급 한계액을 따른다. (별표2-1)<개정 2013.3.22.><개정 2016.4.26.><개정 2016.11.23.><개정 2017.11.22.><개정 2018.12.26.><개정 2020.5.27.><개정 2020.12.23.><개정 2021.6.23.><개정 2021.12.22.><개정 2022.12.28.><개정 2023.1.25.><개정 2023.12.27.><개정 2024.12.26.>

## 직원의 직무급표

(단위 : 원)

직무등급	국장	2급/3급갑팀장	팀원
가	19,800,000	14,520,000	8,040,000
나	17,160,000	12,720,000	7,560,000
다	14,520,000	10,920,000	7,080,000
라	-	_	-

※ 단, 3급갑팀장 이상 직원이 파트장 혹은 연구위원으로 임용될 경우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직급의 다직무 이하로 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직무급 가산액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전문자격	전문자격	000,000	경력개발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문직무 I 의
	(가)	960,000	전문자격(가) 직무 근무자로 선정된 팀원
전문 직무	전문자격	600,000	경력개발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문직무 I 의
今十   I	(나)		전문자격(나) 직무 근무자로 선정된 팀원
	전문자격	360,000	경력개발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문직무 I 의
	(다)		전문자격(다) 직무 근무자로 선정된 팀원
	특수	960,000	경력개발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수전문직무로
전문 직무	전문직무		지정된 직무 수행 팀원
Π	전문직무 960,000	경력개발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문직무Ⅱ의	
	他也何下 	960,000	전문직무직무 근무자로 선정된 팀장 및 팀원

- ※ 전문직무Ⅰ 및 전문직무Ⅱ 유형 중 특수전문직무로 인해 지급받은 직무급 가산액은 성 과급 산정을 위한 연봉월액의 평균금액에서 제외한다.
- ※ 직무급 가산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2-2) <개정 2012.12.26> <개정 2015.2.23> <개정 2015.12.29.> <삭제 2016.4.26.> (별표2-3) <개정 2012.12.26> <삭제 2015.2.23.>

(별표3) <삭제 2021.2.24.>

(별표3-1) <삭제 2021.2.24.>

(별표4) <삭제 2021.2.24.>

(별표 5) <삭제 2017.11.22.>

(별표6) <삭제 2021.2.24.>

(별표7) <삭제 2021.2.24.>

(별표 8) <삭제 2021.2.24.>

(별표 9) <삭제 2021.2.24.>